

## ①-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

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2호서식] <개정 2020. 12. 30.>

###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

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|
| 접수번호        | 접수일자     | 처리기간    | 120일 |
| 신청인         | 성명       | 주민등록번호  |      |
|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| 본인과의 관계 |      |
|             | 주소       |         |      |
| 본인<br>인적사항  | 성명       | 주민등록번호  |      |
|             | 주소       |         |      |
| 예방접종의<br>내용 | 예방접종의 종류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접종 장소    | 접종 일시   |      |
| 진료비         | 간병비      |         |      |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|
| 신청인<br>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| 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<br>2.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| 수수료<br>없음 |
| 특별자치도지사<br>또는<br>시장·군수·구청장<br>확인사항 | 주민등록표 등본   |           |

#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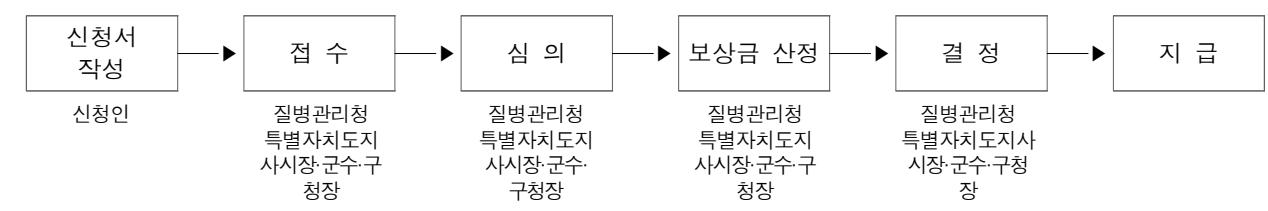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# 처리절차

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